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3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 강훈식·허 영·문진석

윤종군 · 김우영 · 김영진

진성준 • 김한규 • 모경종

정준호 · 김성회 · 신영대

임미애 · 이개호 · 민형배

김교흥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,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됨.

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 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 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, 연차수 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임.

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

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1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활동지원급여비용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급여비용의 산정) ① 급여	제32조(급여비용의 산정) ①
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	
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<u>보</u>	
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	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에 따
다.	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
	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